

감사 결과 (한국표준협회)

1. 감사개요

☐ 감사배경

- 감사원에서 우리부에 이첩한 한국표준협회 비위 통보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

☐ 감사기간 : 2024. 12. 2~12. 6.(5일간)

☐ 처분요구일 : 2024. 12. 12. 및 2025. 2. 21.

2. 감사결과

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및 교통 편의 수수

- 한국표준협회 본부장 A와 위원 B(2021년 협회 퇴사)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 받음(본부장 A: 식사 4회, 교통편의 1회, 위원 B: 식사1회)
- 한국표준협회 인증심사원 C의 경우 심사대상업체 출장 시 교통 편의(1회) 및 식사(3회)를 제공 받음

② 인증심사원 자격 갱신 등 부적정

- 협회 D의 경우 인증심사 참관자로서 사무실 근무, 타지역 출장 등으로 해당 인증심사에 미 참관하거나 참관 인정 기준 시간을 미충족 하였는데도, 심사원들은 D가 참관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심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협회 시스템에 등재하였고,

- D는 위 허위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원 자격 갱신

③ 도서 구매 업무 부적정

- 협회 팀장 6명은 2020년에 구매 필요성 등 검토 없이 임의로 前 협회장이 개인적으로 저술한 도서 966권(약1,100만원 상당)을 구입하여 행사교재용 및 홍보용 등으로 사용

④ KS계약직 인증심사원 채용 방식 부적정

-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신규 위촉된 인증심사원이 협회 퇴직 직원 들로만 선정되어 있는바 인증심사원 채용방식 등 개선 필요

⑤ 비위 직원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

- 금품수수 행위 직원에 해임 및 환수 조치만하고 고발 등 미조치

⑥ KS계약직 인증심사원 평가 업무 등 부적정

-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원의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도, 최근 4년간 심사원에 대한 평가 미실시
- 협회는 2021~2023년 KS인증심사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에 포함된 후속조치(인증심사원 pool 활용)를 미이행한 채 특정 인증심사원(1명)으로 하여금 대부분(80%이상)의 인증심사 건을 처리하도록 함

3. 조치내용

-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(본부장 A)와 과태료 부과(본부장 A 및 위원 B) 조치토록 통보하고, 심사원 C에 대해 심사 참여 배제 조치하도록 통보
- 심사보고서를 허위 작성·제출한 심사원들과 동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갱신한 B에 대하여 각각 계약해지 및 자격취소 조치하도록 통보
- 구매 필요성 등 검토 없이 협회장 저술 도서를 구입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경고
-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인증심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
- 금품수수 행위 직원에 대하여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
- KS서비스 심사원에 대한 심사실적 등 평가결과 없이 심사원 재계약 및 계약해지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,
 - KS서비스 심사원 pool을 활용하고, 심사원 채용 시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